



제 390회 국회(임시회)
재 1 차 국 방 위 원 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 등〉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7944호)

2021. 8.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선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 등(안 제32조의2).....	3
2.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안 제32조의3) ..	14
3. 「국립묘지법」에 따른 안장 규정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60조).....	18
※ 참고자료	2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홍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1. 2. 4.
3. 회 부 일 : 2021. 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군수품,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대부·양여 외에도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기간을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공

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국·공유재산 특례 신설 등(안 제32조의2)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장기 사용허가·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① ----- -----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

현행	개정안
<신설>	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③ 국방기술품질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공유재산에 대한 양여 및 무상 사용허가·대부 (안 제32조의 2제1항)

-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라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으나, 공유재산의 경우 이와 같은 특별 규정이 없음.

□ 이로 인해,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공유재산의 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40조¹⁾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유재산을 국방기술품질원이 사용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2조제1항²⁾ 및 제32조제1항³⁾에 따라 사용료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도 동법 제24조⁴⁾ 및 제34조⁵⁾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됨.

-
- 1) 「공유재산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갈음할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공유재산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 3) 「공유재산법」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 4) 「공유재산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5) 「공유재산법」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 품질보증 및 시험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의 취지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에도 안 제32조의2 조문 제목과 안 제32조의2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조문 제목과 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⁶⁾,

‘양여’가 공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 양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법 해석의 명확성 측면에서 이를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⁷⁾.

6) 구체적으로 ① 안 제32조의2의 조문 제목인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는 ‘군수품 및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로, ② 안 제32조의2제1항이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③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음.

7) 참고 법제처 16-0158 해석례 - 양여는 대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를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재산인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2조⁸⁾에서 국가의 부담이나 공공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무관한 업무 수행 등을 위해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측면에서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임.

□ 반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⁹⁾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에 관한 무상사용 등의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지방자치법」 제122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9) [참고자료 1] 참조

② 국유·공유재산의 장기 사용허가 등(안 제32조의2제2항)

□ 현행 「국유재산법」 제35조¹⁰⁾ 및 제46조¹¹⁾와 「공유재산법」 제21조¹²⁾ 및 제31조¹³⁾에 따르면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기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1년부터 20년 이내로 제한하면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사용허가 등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갱신을 위한 주기적인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
- 10)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갱신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1) 「국유재산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12) 「공유재산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 13) 「공유재산법」 제31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2. 제1호 외의 재산: 1년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대부기간은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있으며, 사용 및 대부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에서 국·공유재산의 장기간 사용 및 대부를 허용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업무 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¹⁴⁾에 의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를 정해야 하며, 다른 법률로 [별표]를 개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유재산 관련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해야 함.

그런데, 현행 [별표]는 「방위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만 규정하고 있고¹⁵⁾, 장기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장기 사용허가에 관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현재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발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1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205. 「방위사업법」 제32조의2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양여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령으로도 국유재산의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에 대한 장기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③ 영구시설물의 축조(안 제32조의2제3항)

□ 현행 「국유재산법」 제18조¹⁶⁾ 및 「공유재산법」 제13조¹⁷⁾에 따르

16)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0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상당액에 대하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17)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5.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公衆)·지상·지하

면 기부나 사용 종료 후 철거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에는 국유 재산이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군수품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개정안에서 영구시설물의 축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부 및 원상회복 조건을 임의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용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¹⁸⁾.

□ 또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¹⁹⁾에서 국유재산특례의 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 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18)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영구시설물의 축조로 인하여 공공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대부기간이나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시설물을 기부하거나 원상회복 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출처: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요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국유재산특례의 목적과 적용대상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해당 재산의 활용·처분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제약되므로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지며,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므로²⁰⁾ 별도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 또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 제13조²¹⁾ 및 동법 시행령 제9조²²⁾ 등 현행법에 따라 기부 및 철거 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영

20)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4. 제50조의2에 따라 개발하는 경우
5.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시행 전에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괄청 및 관련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삭제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

구시설물을 축조 가능하므로 공유재산에 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임.

□ 반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정책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들이 많으므로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해서도 영구시설물 축조에 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²³⁾.

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5. 제29조제1항제13호·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국방과학연구소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향토문화사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 42건

2.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안 제32조의3)

-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2조의3(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은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 ☐ 현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²⁴⁾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24)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1. 국방부 소속 기관장(국방부 직할 부대장을 포함한다)
 2.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3.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 가.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
- 마.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방기술품질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이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나목25)에 해당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으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26)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항27)에 따라 제2조제4항28)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시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

-
- 25)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2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에 인접한 작전시설(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진지 구축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기능이 상실되어 해당 작전시설을 대체하는 작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등을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행자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7)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하여 협의대상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등”은 “협의대상자”로 본다.
- 28)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④ 국방부장관은 군부대 통합 또는 재배치, 국방·군사시설의 노후 등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이 필요한 경우(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협의대상자”라 한다)와 그 사업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는 인·허가 의제 조항, 협의 간주 조항 등을 적용받지 못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표 1] 사업시행자 간주 여부에 따른 차이

구분	사업시행자로 간주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보상 수용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작성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사업계획(안) 일간신문 등 공고 및 열람 ·사업시행기간 내 재결신청 가능	-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사업인정신청서 작성 후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필요 ·사업인정 고시 후 1년 내 재결신청 가능
인가 허가	-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실시계획 작성 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인허가 의제사항 일괄 협의 ·국방시설본부장에게 건축 등 승인신청 후 관할 지자체로 결과 통보	- 「건축법」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연구소 건축물의 용도가 국방군사시설로 분류되어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신청 반려 예상 ·승인권자가 관할 지자체 및 관련 행정기관으로 다양화되어 협의에 어려움

※자료: 국방부

□ 이에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로 간주되면,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이 의제되고,

동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승인 및 통보가 있으면 건축 허가·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등²⁹⁾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임.

- 참고로,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2³⁰⁾에 의해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간주되고 있음.

29) [참고자료 2] 참조

30)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2(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3. 「국립묘지법」에 따른 안장 규정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60조)

-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생략)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② ----- ----- ----- ----- ----- - 적용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 ☐ 현재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와 그 요건에 대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³¹⁾에서 규정하고 있음.

31) [참고자료 3] 참조

[표 2]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 (1)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의된 사람
- (2) 순국선열 ·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 (3) 현역군인 ·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4) 무공수훈자로서 사망한 사람
- (5)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6) 전사 · 순직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7) 전 · 공상군경으로서 사망한 사람
- (8)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및 소방지원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9) 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10)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 (11) 순직 · 공상공무원
- (12) 국가사회공헌자(외국인도 안장대상에 포함)로서 사망한 사람
- (13) 독도의용수비대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14)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희생자

□ 그런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카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³²⁾,

3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2.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에도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³³⁾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³⁴⁾,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무기개발과 관련한 폭발업무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려움.

□ 이에 개정안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방위사업법」에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이 보유탄약 등에 대한 절단업무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도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및 공무원과 같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적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33)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임직원의 지위)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회의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34) 실제로, 로켓 추진용 연료로 쓰이는 니트로메탄을 다루는 실험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카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2019년 11월 15일에 안장을 결정한 바 있음(출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안장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³⁵⁾.

□ 이에 대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이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통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임.

□ 반면, 국가보훈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의 경우에도 처벌에 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있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은 없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5)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개별 법률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으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 대상자가 아님에도 개별 법률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유일함.

문 의 처
02)6788-5306

※ 참고자료

1.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입법례

법률명(관련 조문)	내용	대상기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고엽제전우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공공의료보건기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유상·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민체육진흥법」	공유의 시설·물품, 그밖의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 또는 대부	국민체육진흥계정관리기관
「노인복지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적십자사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대한민국헌정회
「도로교통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독립기념관법」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대부, 관리	독립기념관
「문화재보호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문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률구조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대한법률구조공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새마을운동조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무상 또는 우선적인 제공	등록수목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용산공원관리센터
「울산과학기술원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울산과학기술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	중증장애인생산물업무수행 기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을 무상 양여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6.25참전유공자회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태권도진흥재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물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특수임무유공자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유총연맹 육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자유총연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청소년연맹 육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양여 및 사용·수익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환경공단법」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한국환경공단
「항만공사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	해양환경공단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관련 조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수용 및 사용) 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고시구역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및 통보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통지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에서 정한 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인가·허가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해제·결정·동의 및 계획의 수립·변경 등(이하 “인가·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호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한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의 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5.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1.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2.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7.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8.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② 국방부장관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8조(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의 특례) ① 국방·군사시설의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하 “건축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9조, 제29조제1항 및 제8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군사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국립묘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안장 대상자와 안장 대상자 요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상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정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25참전제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 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2. 국립4·19민주묘지 및 국립3·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 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사망자와 4·19혁명부상자 또는 4·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 3.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 4. 국립호국원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 5. 국립신안산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 대상자의 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 ② 법 제5조제1항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은 제외한다)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행하는 직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의 수행을 말한다.
 - 1.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에서의 교정업무
 - 2. 재해의 예방·대응·복구 현장에서 인명구조, 진화, 구난, 방역 등의 직무
 - 3. 헬기에 탑승하여 산불진화, 병해충 방제, 인명구조 등의 직무
 -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자만 해당한다)
 - 5. 간첩체포 및 대 테러활동 등 국가안전보장 직무(국가정보원 직원만 해당한다)
 - 6.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무
- ③ 법 제5조제1항제1호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 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 ④ 법 제5조제1항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1. 「상훈법」 제12조, 제16조,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의 훈장을 받은 사람
 - 2. 제1호에 따른 훈장을 받을 수 있는 활동 또는 업적에 준하는 활동을 하거나 업적을 이루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 ⑤ 법 제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1.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등에 현저하게 공헌한 실적이 있을 것
 - 2. 사망 당시 국적 보유국에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하였을 것